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규정 을 삭제하고,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 없는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규정 삭제: 제5장(제15조~제19조) 삭제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 상위법 「에너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앴.

나.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분 산정기준 추가: 제26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 정비

-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3396-5624, FAX: 3396-8765, 메일: yej74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5조~제19조)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p> <p>제15조(대상 건축물)</p> <p>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2. (생략)</p> <p>②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7.(생략)</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p> <p>제16조(온도관리기준)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2. (생략)</p> <p>제17조(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19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삭제)</p>
<p>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생략)</p>	<p>제26조(재정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u>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u></p>